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실무해설 ①

황영환 / 대한설비건설협회 기술지원실 부장

1. 물가연동제의 의의 및 관련법령

1) 물가연동제의 의의

- (1) 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을 하는 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칙”의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Escalation 또는 De-Escalation)이다.
-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에 규정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발주관서가 조정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 (3)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되어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나, 증액조

정할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증액되는 금액 만큼 공사량을 줄여서 계약금액조정이 되어야 한다.

2) 국가계약법관계법령 주요 개정연혁

- (1) 1993. 9. 23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 예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를 계약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수조정율” 방법으로 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함
- (2) 1999. 9. 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예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도 계약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방법 결정
 - T / K 공사도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지수 · 품목조정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물가변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함.
 - 입찰실시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계약체결전에 환율, 노임, 자재 가격 등의 변동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일을 기준으로 특약을 정할 수 있게 함.

- 계약당사자로부터 계약금액조정은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함.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특례를 부칙으로 정함
 -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금융결제원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 환산함.
- (3) 2003. 12. 26 : 회계예규 지수조정을 산출요령 개정
- 지수조정을 K값 산출시 각 비목군의 지수는 계약체결시점과 조정기준일시점의 지수를 각각 적용토록 함
- (4) 2004. 4. 6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함.

2. 계약금액 조정요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 계약체결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 품목조정을 또는 지수조정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되는 것이 동시에 충족

1) 계약체결후 60일 이상 경과 요건

- (1) 취지
60일이라는 기간요건을 둔 것은 계약당사자

가 계약체결후 60일 정도의 기간 동안은 물가변동을 어느정도 예측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고 그 기간 이상되는 경우에만 물가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또한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도 6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절차상 번잡하여 물가변동은 반영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2) 60일 기산일

60일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기산한다. 물론 2차 이후의 기산점은 직전 조정기준일이 된다.

(3) 장기계속계약의 기산일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수차에 걸쳐 년차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기간요건 기산일체결일이 된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였다라고 기간 산정시점은 당초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이다.

(4) 발주자측의 사정으로 중지된 기간 포함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도 60일 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시킨다.

2) 품목조정을 또는 지수조정이 100분의 5 이상 증감

- (1)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증감된 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품목조정을 또는 지수조정이 최소한 100분의 5이상은 증감되어야 이를 반영한다는 취지
- (2) 조정방법의 선택·명시
동일한 계약에서 품목조정에 의한 방법과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계약시에 미리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계약당사자간에 조정방법을 합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회제 2210-743, 1986. 3. 21)

※ 계약서에 명시된 조정방법을 이행도중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변경을 허용할 경우 조정의 일관성이 없어질 뿐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회제 45107-2328, 1995. 11. 28)

※ 입찰실시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계약체결 전에 환율, 노임, 자재가격 등의 변동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특약을 정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74조 제8항)

(3) 위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

계약체결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되는 것이 동시에 충족될 것을 조정요건으로 하고 있다.

※ 이 2가지 조정요건이 충족된 날을 “조정기준일”이라 한다.

(4) 조정신청의 전제

계약금액이 증감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도록 규정(공사계약일 반조건 제22조 제3항)하고 있어 동 신청을 절차상의 조정요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계약금액이 감액될 경우에 대해서는 발주관서의 요청에 의하여 감액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 감액조정인 경우 별도의 신청요건이 없더라도 이해관계자는 발주기관이므로 감액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요청을 하여야 한다고 봄. 즉, 감액요건의 증명 및 조정내역서의 작성책임은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있는 것임.(회제 41301-116, 1999. 1. 12)

※ 물가변동신청이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성립되며, 단순히 조정요구 공문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행위로 볼 수 없음.(회제 45107-51, 1995. 1. 13)

※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를 수행중인 현장의 경우에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조정 신청서는 감리원이 아닌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접수하여야 하는 것임.(회제 45127-2045, 1996. 9. 5)

※ 조정신청후 보완요구하여 보완 서류를 제출한 경우의 신청일은 신청된 물가변동 자료가 법률에서 정한 최소한의 형식조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최초의 신청일과 보완하여 제출한 신청일로 구분 적용함.

3. 조정금액 산출기준

1) 조정기준일의 기준

(1) “조정기준일”이란 물가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즉 계약체결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되어야 하는 2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된 날을 말한다. 따라서, 계약자가 조정신청을 한 날이나 발주관서가 실제로 조정한 날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다.

- (2) 조정을 계산에 있어서는 총계약금액중 조정 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2) 물가변동적용대가의 대상

- (1) “물가변동적용대가”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며,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지체되어 이행되지 못하고 조정 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2) 그러나 이행지체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발주관서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기타 사회적, 인위적 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일 때에는 당해 기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도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에 포함한다.

※ 물가의 하락으로 감액조정하는 경우에도 공사공정예정표의 물량보다 앞서 시공하거나 지연되는 경우를 불문하고 공사공정 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은 증액조정의 경우와 동일함.(회제 41301-3235, 1998. 10. 19)

- (3)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1차 부기한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3)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

물가변동적용대가산정은 당초 계약체결시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된 “공사 공정 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며,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 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한다.

4) 조정금액 공제

- (1) 조정기준일 전에 선금을 지급한 경우

- ①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금액에서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공제한다.

$$\text{공제금액} = \text{물가변동적용대가} \times \text{조정율} \times \text{선금지급율}$$

※ 선금지급율 : 당해 계약금액에 대해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의 비율

※ 선금을 지급한 후 기성대가를 지급하였고 하더라도 선금잔액을 기준으로 선금공제액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금으로 지급한 금액전체를 대상으로 선금공제액을 산정함.

※ 증액조정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아 물가인상 전에 자재 등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선금부분만큼은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부담이 없게 됨으로 이중혜택을 방지하고자 공제하는 것이지만, 감액조정시에는 미리 받은 선금으로 높은 가격에 자재 등을 확보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가 이득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액금액에서 선금을 또 다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

법령해설

- 은 것임.(회계 41301-2889, 1998. 9. 18)
- ②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경우 선금공제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금액이다.(시행규칙 제74조 6항)
- (2) 조정기준일 이후에 선금 및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
- ① 선금지급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② 기성대가는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기성대가 지급신청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회계 2210-724, 1992. 10. 30)

※ 종전(1992. 10. 30 이전)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만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였으나 그 후는 확정급이라도 기성대가 지급신청 전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준공대가 지급여부 및 준공여부와 관계 없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품목조정을 및 지수조정에 의한 방법 비교

| 구 분 | 품목조정에 의한 방법 | 지수조정에 의한 방법 |
|----------|----------------------------------------------------------------------|--------------------------------------------------------------------------------------------------------|
| 개 요 |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변동으로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5%이상 증감시 동 계약금액조정 |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의 지수 변동으로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5%이상 증감시 조정 |
| 조정율 산정방법 |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율 산정 |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한 "비목군"을 분류 • 당해 비목군에 계약금액에 대한 가중치 부여(계수) • 비목군별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등을 대비하여 산출 |
| 적용대상 | • 공사의 종류와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선택 적용 | • 공사의 종류와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선택 적용 |
| 장 점 |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등락율을 산출하므로 당해 비목에 대한 조정사유를 실제대로 반영 가능 | •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수입물가지수 등을 이용하므로 조정율 산출이 용이 |
| 단 점 | • 매 조정시마다 수많은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율을 산출해야 하므로 계산이 복잡함 • 따라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 • 평균가격 개념인 지수를 이용하므로 당해 비목에 대한 조정사유가 실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 용 도 | • 계약금액의 구성비목이 적고 조정회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 적합(단기, 소규모, 단순공종공사 등) | • 계약금액의 구성비목이 많고 조정회수가 많은 경우에 적합(장기, 대규모, 복합공종공사) |

주) 계약금액조정에는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 제외

4. 품목조정에 의한 조정방법

1) 의 의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품목조정을 산정한 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동 품목변동율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2) 산식(시행규칙 제74조 1항, 2항)

- 조정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품목조정율
- 품목조정율 =
$$\frac{(\text{등락폭} \times \text{수량}) \text{의 합계액} + [\text{통합계약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text{계약금액}}$$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율
- 등락율 =
$$\frac{\text{물가변동 당시가격} - \text{계약체결 당시가격}}{\text{계약체결 당시 가격}}$$

※ 앞의 산식 중 수량 및 계약금액은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 외한 수량 및 계약금액임

3) 산정방법

(1) 계약체결당시 가격의 산정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은 계약을 체결하는 당시에 적용되는 거래실레가격,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발표한 시중노임 등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다.

예정가격 작성시점과 계약체결 시점간의 시차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은 예정가격조서상의 예정가격단가와 동일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시차로 인하여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예를들면, 공사부문의 시중노임이 8월(9월 1일 발표) 및 12월(1월 1일 발표)경 1년에 2차례 조사·발표되고 있는데 하반기 시중노임 발표전에 입찰을 실시, 하반기 시중노임 발표 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이 계약체결당시 가격으로 인정한다면 등락율이 실제보다 높게(또는 낮게) 산정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물가변동당시 가격의 산정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산정방식과 동일한 방법 및 기준으로 가격변동당시의 당해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산정한다.

예를 들면, 거래실레가격의 적용에 있어서 계약체결당시 가격정보지에 게재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물가변동당시의 가격도 가격정보지 게재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계약체결당시 가격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 예컨대, 계약체결당시에는 가격정보지에 기재된 품목이 물가변동 당시에는 삭제되어 가격이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계약체결 당시에 견적서를 냈던 업체가 물가변동 당시에는 폐업해 버려 견적가격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물가변동 당시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당해품목에 대한 계약체결당시 가격과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모두 파악하여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예: 가격정보지 대신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 폐업된 업체 대신 유사한 다른 업체의 견적)으로 계약체결당시 가격과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파악 하여 등락을 등을 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3) 등락율의 산정

등락율은 물가변동 당시 어느 한 품목의 가격이 계약체결 당시와 비교하여 얼마만큼 상승 또는 하락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비율을 의미한다.

(4) 등락폭의 산정

등락폭은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써 여기에 수량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하면 등락폭의 합계액이 된다. 등락폭의 산정방식은 계약당가와 계약체결 당시 산정한 가격 및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가격의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① 계약당가 <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가격 <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가격

$$\text{등락폭} = \text{계약당가} \times \text{등락율}$$

$$(\text{계약당가} + \text{등락폭}) \leq \text{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가격}$$

②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가격 < 계약당가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text{등락폭} = \text{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 \text{계약당가}$$

③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가격 <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가격 < 계약당가

$$\text{등락폭} = 0$$

(5) 승률비용의 등락폭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이른바 승율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회계 125-1823, 1991. 7. 24)

다만,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적용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등락폭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회계 45107-518, 1996. 3. 19)

(6) 조정금액의 산정

① 계약단가

공중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계약단가로 한다.(시행령 제65조 3항)

② 계약금액

품목조정률을 산출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계약금액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하되,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모든 금액은 제외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금액이 증감되었다면, 그 증감된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조정금액산정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 즉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서 선금지급 해당분을 공제한 후 당초 계약금액에 산정된 조정금액을 가감하면 품목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완료된다.

4) 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금액 산정예시

예시조건

- 계약일자 : 2002. 10. 11
- 공사기간 : 2002. 10. 14 ~ 2003. 12. 31
- 계약금액 : 54,000원
- 선금지급일자 및 금액 : 2002. 10. 25, 16,200원(30%)
- 조정기준일 : 2003. 1. 2
- 물가변동적용대가(2003. 1. 2이후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 27,190원

산정해설

① 조정율 : $5,274 / 27,190 \times 100 = 19.39\%$

② 조정금액의 산정

- 공식 : 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조정율
- 금액 : 5,274원(27,190 × 19.39%)

③ 선금지급 해당액 공제

- 공식 :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조정율 × 선금비율
- 금액 : 1,581원(27,190원 × 19.39% × 30%)

④ 계약금액의 조정

- 실 증감액 산정(5,274 - 1,581 = 3.693)

■ 품목조정율 및 조정금액 예시

| 비목/구분 | 수량 | 계약체결시 | | 내역서상의 | | 등락된 단가 (C) | 등락율 (D)= (C)/(A) | 등락폭 | | 변경(조정) (F)= (B)+(E) |
|-------------------------------|----|-------|--------|-------|--------|------------------|------------------------|---------------|-------|---------------------------|
| | | 산정가격 | | 계약가격 | | | | 단가 E(B)(D) | 금액 | |
| | | 단가(A) | 금액 | 단가(B) | 금액 | | | | | |
| ① 재료비 A | 10 | 100 | 1,000 | 90 | 900 | 120 | 20% | 18 | 180 | 108 |
| ② 재료비 B | 20 | 200 | 4,000 | 210 | 4,200 | 240 | 20% | (42)30 | 600 | 240 |
| ③ 재료비 C | 10 | 300 | 3,000 | 370 | 3,700 | 360 | 20% | (74)0 | 0 | 370 |
| ④ 재료비 D | 5 | 100 | 500 | 80 | 400 | 90 | 10% | 8 | 40 | 72 |
| ⑤ 재료비 E | 5 | 200 | 1,000 | 210 | 1,050 | 180 | 10% | 21 | 105 | 189 |
| ⑥ 노무비 | 40 | 300 | 12,000 | 280 | 11,200 | 390 | 30% | 84 | 3,360 | 364 |
| ⑦ 경비 | | 100 | 100 | 90 | 90 | 120 | 20% | 18 | 18 | 108 |
| (소 계) | | | | | 21,540 | | | | 4,013 | |
| ⑧ 일반관리비(6%) | | | | | 1,292 | | | | 240 | |
| ⑨ 이윤[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15%] | | | | | 1,887 | | | | 542 | |
| 총 원가 | | | | | 24,179 | | | | 4,759 | |
| ⑩ 부가가치세(10%) | | | | | 2,471 | | | | 479 | |
| 계약금액 | | | | | 27,190 | 등락폭등의 합계액 | | | 5,274 | |

주) 일반관리비 등락폭 = 4,013 × 6% = 240

이윤 = [노무비등락폭(3,360) + 경비등락폭(18) + 일반관리비등락폭(240)] × 15% = 3,618 × 15% = 542

계약금액 :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 제외

• 당초 계약금액 + 증감액 = 변동계약금액 (54,000 + 3,693 = 57,693)

- ⑤ 경비 증감금액 산정의 경우에 전력비 단가와 같이 직접 가격변동을 비교할 수 있는 비목은 재료비 비목의 등락폭 산정방법과 같이 산출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재보험료와 같이 재료비나 노무비에 일정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비목은 산출 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등락금액을 산출함
- ⑥ 일반관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등락폭 합계액에 산출내역서상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 ⑦ 이윤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등락폭 합계액에 산출내역서상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 ⑧ 부가가치세는 총등락폭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하여 산출함